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3일, 오세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오세희의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 지원 범위 확대

개정안은 동 법률의 목적 및 통상변화대응 지원기준과 관련된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외국과 체결한 조약 등뿐만 아니라 외국
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조치 등을 ‘통상위기’ 용어로 정의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통상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u>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	제1조(목적) ----- <u>통상조약</u> ----- ----- ----- ----- ----- ----- ----- -----

현행	개정안
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 제2조(정의)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1의2. “통상위기”란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국제적인 분쟁·전쟁·재난·제재 등 통상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국내 산업 및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개정안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u>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u>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u>상황을 말한다.</u> 2. ----- ----- ----- -----<u>통상조약 등의 이행이</u> <u>나 통상위기로</u>----- ----- ----- ----- ----- -. 3. ----- ----- -----<u>붕</u> <u>괴,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u> <u>련 일방적 조치 등 통상위기를 포</u> <u>함한</u>----- ----- ----- -----.

우선, ‘통상조약 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나목)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정부가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을 예방·극복·최소화하기 위한 ‘통상변화대응’(제2조제2호)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통상피해를 최소화·극복하기 위한 ‘통상피해대응’(제

2조제3호)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중 ‘통상피해대응’ 정의 및 지원규정(참고자료 참조)은 2022년 4월 개정법률²⁾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미국·EU 등 해외사례와의 형평성³⁾을 감안하여 기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임.

[표 2] 통상변화대응·통상피해대응(舊무역조정지원) 제도 변천

구분	'06. 4월	'07. 12월	'12. 1월	'16. 1월	'21. 10월	'25. 1월
법률 명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피해 원인	FTA 이행				- FTA 이행 - <u>통상환경</u> 급격한 변화	- 통상협정 등 이행 - <u>통상환경</u> 급격한 변화
대상 업종	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일부개정]

-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59호)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 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적용 협정	자유무역협정	통상협정 등 (FTA + α*)
----------	--------	----------------------

주: * 최근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중심의 FTA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공급망 대응·포괄적 협력 요소 등이 반영된 형태의 '통상협정' 추진 중

예) 디지털협정(DEPA, D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이는 통상환경이 FTA 등 통상협정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은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검토에 착수하여 3월 품목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를 시행하고, 4월 상호관세 부과(한국 25%)를 예고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기업이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3항4)에 따라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5% 이상 감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소하였거나, 감소할 예정이라는 통상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개별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를 조속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한편, 현행법 제6조제2항5)에 따르면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지원받는 경우에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른 무역·통상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미국 관세정책과 같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 일 것

은 사례가 재발하더라도 관련 기업에 대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 무역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통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특정 국가의 무역·통상조치를 통상변화대응 지원제도 내에 포함하여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전적·예방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통상조약 등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르면 ① 법령의 제·개정이나 ② 법령에 따른 관세 인상, 환경기준 신설·강화 등의 무역·통상 관련 제도·기준의 변경뿐만 아니라 ③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단순 통관지연, 검사강화 등의 집행·운영상 행정조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와 같이 단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별로 경중 및 내용상 편차가 커서 지원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엄격해져 피해가 확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상피해대응 제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외국의 통상조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존 정의 규정은 통상조약 외에 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를 포괄하고자 ‘통상조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타국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조치는 기존 국제적 합의 개념과 범주가 상이하므로, 이를 ‘등’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상조약 등’ 용어 명칭에 개정안에 따른 확대된 개념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거나, 안 제2조제1호나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통상위기’ 정의규정 신설 및 통상변화대응·통상피해대응 지원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호의2는 모든 외국이 아닌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나 전쟁·제재로 인해 국내 산업 및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통상위기’로 규정함.

그리고 앞서 신설한 안 제2조제1호나목은 모든 외국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취한 무역·통상조치를 폭넓게 ‘통상조약 등’으로 포함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비해,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통상위기’를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 지원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주요 교역국이 취한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 또는 국제분쟁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 또는 통상피해대응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즉, 무역비중이 큰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 제2조제1호나목 등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해당하여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안 제1호의2 등은 ‘통상위기’ 개념을 신설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통상위기’ 정의규정에 따르면 국제분쟁·재난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 무역비중이 크지 않은 국가간 국제분쟁·재난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적정한 지원요건 및 지원범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 제도를 각각 살펴보면,

통상변화대응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선제적·예방적으로 기술·경영혁신, 융자 등을 지원하는데,

통상피해대응은 상대국의 무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통상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며, 통상변화 대응과 같은 기술·경영혁신, 융자 지원 외에도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 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표 4] 통상변화대응·통상피해대응 지원제도간 비교

제도	통상변화대응	통상피해대응
지원요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해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통상영향/통상피해 판단기준	1. 우려되는 통상영향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것인지 여부 2. 통상영향품목 무역의 변화가 현저한지 여부 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통상조약 등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1. 예상되는 통상피해가 명백하고 피해상황이 급박한지 여부 2.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 3.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생산설비 가동률의 현저한 하락 등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지원내용	기술·경영혁신, 융자지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지원	- 좌동 (준용) -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다만,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통상위기’ 개념을 신설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나목에서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를 ‘통상 조약 등’으로 포괄하여 현행법에 따라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14조에서 통상피해대응 지원요건 유형⁶⁾ 중 하나인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피해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1호나목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또는 피해를 받는 기업에 대해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을 모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위기’ 개념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동 법률의 목적조문(안 제1조)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통상조약 등의 범위에 국가간 체결된 조약 등보다 확대되어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가 포함된 점을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임.

6) 통상피해 유형

가.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러나 안 제2조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는 ‘통상위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통상피해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 또는 통상피해대응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통상위기’ 용어를 신설하는 경우 목적조문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여야 목적조문이 법률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입법취지를 적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2.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의 지정요건 및 판로개척 지원

개정안은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지정요건으로 ‘상대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8항).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나. (생략) 다. <u>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u> 라.·마. (생략) ④ ~ ⑦ (생략)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상대국의 무역제한이나 그 밖</u> <u>에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등으로</u> ----- ----- 라.·마.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현행	개정안
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⑨ (생략)	-----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현행과 같음)

우선, 현행법 제14조제3항은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교역환경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 제14조제3항은 최근 상대국이 ‘그 밖에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등’으로 인해 통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는 상대국의 수입금지나 수량제한조치가 아닌 관세인상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기업이 통상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앞서 정의규정을 개정하면서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또는 전쟁·제재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통상변화대응이나 통상피해대응을 지원하고자 함.

즉, 통상위기 유형 전반을 통상피해대응 지원하고자 하는 정의규정과 달리 지원근거 조문에서는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유형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조치국가를 ‘주요 교역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조문간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법 제14조제7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지원, 융자지원 등(제7조~제10조)을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제8항⁷⁾은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도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인 유형별로 법률에 명시하여 상대국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즉각적인 수출액 감소 및 시장접근성 저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유사하게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에 대해 판로개척지원을 하려는 내용으로 2개의 동법 개정안⁹⁾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구체적인 판로개척·확보 지원사업 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6] 개정안별 판로개척지원사업 규정 비교

구 분	송재봉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준용)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준용)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형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2.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 과 상품 홍보를 위 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9) ① 의안번호 제2214227호, 2025. 11. 13.,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② 의안번호 제2214683호, 2025. 11. 28.,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구 분	송재봉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3. 그 밖에 통상변화 대응 지원 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통상변화 대응 지원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통상위기대응 긴급지원계획 수립·시행

개정안은 통상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이하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긴급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표 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8조(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 등) ① 정부는 통상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이하 “긴급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긴급지원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u> <u>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관기관의 장, 그 밖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긴급지</u>

현행	개정안
	<u>원계획과 그 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3항에 따른 통상위기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재 산업통상부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¹⁰⁾,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¹¹⁾, 통상피해지원단으로 하여금 통상피해지원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¹²⁾.

10)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① 위원회는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2)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6조의3(통상피해지원단)

② 통상피해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피해의 발생 원인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분석

2. 통상피해 지원방안의 수립

3. 통상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4. 통상피해지원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의 운영

5. 통상피해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의 점검

6.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통상위기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 통상피해대응 지원요건과 개정안에 따른 통상위기의 개념·요건을 각각 비교하면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규정상 통상피해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및 개정안에 따른 신설 제도가 기능적으로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제도간 적용관계 및 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6] 현행 통상피해대응지원-개정안 통상위기대응 긴급지원 요건 및 내용 비교

구분	통상피해대응지원	통상위기대응 긴급지원
피해/위기 유형	(현행법 제14조제3항제2호) 가.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나. 공급망 붕괴 다. 상대국 무역제한 등 조치 라. 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자원의 이동 제한 마. 그 밖에 매출·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안 제2조제1호의2) - 주요 교역국의 무역·통상 관련 일방적 조치 - 국제 분쟁·전쟁·재난·제재 등 통상환경의 중대한 변화
계획 수립	-통상피해지원단은 통상피해 조사·분석 실시 후 지원방안 수립(규정 제6조의3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종합·수립(안 제18조제2항)
지원단 구성	-관계부처·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상피해지원단’ 구성·운영(규정 제6조의3제1항)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상위기지원단’ 구성·운영(안 제18조제3항)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